

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10. 26.
북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10. 12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0. 10. 13.
- 다. 상정일자 : 제24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20. 10. 26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교육지원과장 김영란

가. 제안이유

「평생교육법」과 상이한 부분을 상위법에 맞게 정정하고 평생교육협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내용 등을 정비하여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목적 내용 간결화(안 제1조)
- 2)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용어 정비(안 제2조)
- 3)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내용 개정(안 제5조 및 제8조)
- 4) 회의 소집할 수 있는 경우 중 중복 내용 삭제(안 제6조)
- 5)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지정 근거 마련(안 제9조)
- 6) 법제처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(안 제3조, 제4조, 제10조, 제15조)

3. 검토보고 (조광현 전문위원)

○ 본 개정조례안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」는 2007.5.3. 제정하여 2009.11.12. 최종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미정비하여 상위법인 「평생교육법」과 상이한 부분과 평생교육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려는 것임.

○ 주요 개정 내용은 안제 5조 및 제8조에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으로,

- 「평생교육법」에 맞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의장 및 부의장으로 수정
-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
- 위원 임기 중 연임제한 없음을 한 차례만 연임
- 위촉직 위원에 마포구의회의원이 포함되도록 명시

안 제9조에서는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 단위 평생학습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, 안 제4조, 안 제10조 및 안 제15조에서는 법제처의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한 것으로,

○ 이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 하도록 한 규정에 부합하고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